

농 촌 진 흥 점

총무 200-128 1971.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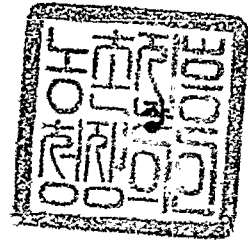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연구 및 지도직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적위임

1. 연구 공무원 및 지도직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총무 200-218 (71. 1. 30)로 각도지사에게 위임한바 있으며,

2. 동의임에 대하여 권박남도지사는 별첨 사본과 같이
도농촌진흥원장에게 적위임 하였기 이를 알미니 인사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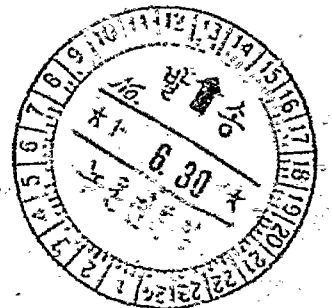
정부	보부	180-149 (71. 4. 27)	공문	사본 1부.	"공"
계	임계장	사과장	국국장	부시장	장
			농	촌	진
			흥	원	장



수신처

나 (-8,9), 광도농촌진흥원장.

문서처리인	접수	서울특별시	전결	장전철
	일시	71.7.2	과	
	접수	7355	접수	2518
	번호		처리	7월2일



사본

전 마 남 도

번무 180-149

1971. 4. 13.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전마남도 사무위임 규칙중 개정규칙 공포

- 1. 문탁동보심장은 본 규칙을 도보에 게재 공포함.
- 2. 별첨과 같이 전마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 공포 하였기

용지함.

첨부 : 전마남도 규칙 제522호 공포문 1부. 끝

전 마 남 도 지 사

후신지

마. (1은 2부). 박. 농촌진흥원.

사본자 : 전남농촌진흥원 서무과 지방행정주사 김이경(인)

공 포 관

전라남도 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라남도지사 김 계 식

1971. 4. 1.

전라남도규칙 제522호

전라남도 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 (안)

전라남도 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무의 임무를" 다음에 "농촌진흥원장"을 삽입한다.

제2조를 제2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임용령 제5조에 의한 4급 이하의 연구직 및
저도직 임용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公務員任用令의 關於 質疑 圖示

1. 質疑 (國立工業研究所長)

各理工系大學校의 研究生課程 碩士課程
博士課程을 修了했거나 修了하고學位를取得
한者의 各課程을 研究職公務員에 限하여
"研究總"에 該當시킬수 있는지의 여부

答 (總務處長官)

學位或 修了課程이 研究職列의 該業務外
直接的인 關聯性이 있는 經過에는 任用
決定職에 關聯된 "研究總"으로 간주

該補任用期間 短縮期間에 對한 質疑

1. 質疑 (全羅南道知事)

水竹大 行政大學校 修學總"을 研究總"으로
認定한것과 한바 一般大學의 碩士學位를 修學
한 經過) 認定可否 및 該補期間을 短縮할수 있는지

水. 私教의 經過에는 總務處長官이 指定한것에
限하고且 規程한바 指定된 機關이 있는지 - -



答 (總務長官)

ハ一般大學の碩士學位課程に 試補任用
期間短縮対象範囲に 認定される旨
ハ 總務長官に 別途指定の私設機関に
由る旨